

내부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

문서 번호 : 별책-총무-29
개정 번호 : 1
시행 일자 : 2024년 05월 07일
페이지 수 : 총 7 쪽

관리 번호 (CONTROLLED COPY)	
관리 책임자	

내 부 투 명 경 영 위 원 회 운 영 규 정	문서번호: 별책-총무-29 시행일자: 2024.05.07 페이지수: 3
F-2. 목 차	개정번호: 1

【목 차】

F-1. 제(개)정 기록부

F-2. 목 차

- 제 1 조 목 적
- 제 2 조 적용범위
- 제 3 조 구 성
- 제 4 조 위 원 장
- 제 5 조 임 기
- 제 6 조 소집권자
- 제 7 조 소집절차
- 제 8 조 결의방법
- 제 9 조 부의사항
- 제 10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
- 제 11 조 통지의무
- 제 12 조 의 사 록
- 제 13 조 규정의 개폐
- 부 칙

내부투명경영위원회운영규정	문서번호: 별책-총무-29 시행일자: 2024.05.07
목적, 적용범위, 구성, 위원장, 임기, 소집권자	페이지수: 4 개정번호: 1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흥아해운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내부투명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구성)

- (1)위원회는 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.
- (2)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로 한다.
- (3)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4조(위원장)

- (1)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(2)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(3)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다른 사외이사가, 모든 사외이사가 유고 시에는 본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조 (임기)

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동안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소집권자)

- (1)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4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(2)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내 부 투 명 경 영 위 원 회 운 영 규 정	문서번호: 별책-총무-29 시행일자: 2024.05.07
소집절차, 결의방법, 부의사항, 관계인의 의견청취	페이지수: 5 개정번호: 1

제7조(소집절차)

(1)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(2)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(결의방법)

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아래 사안에 대해서는 각 이사와 감사에게 해당 의결을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, 특수관계인을 위한 자금, 유가증권, 자산거래 중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
- 2.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,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회사를 위한 상품용역 거래 중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가 자본거래 혹은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
- 3.상기 거래에서 거래목적, 거래대상, 거래금액 등 주요변경 사항 발생 시 또는 당초 의결 금액 대비 20%이상 증가 시
- 4.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
제10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내부투명경영위원회운영규정	문서번호: 별책-총무-29 시행일자: 2024.05.07
통지의무, 의사록, 규정의 개폐	페이지수: 6 개정번호: 1

제11조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3일 이내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의사록)

-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3조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내 부 투 명 경 영 위 원 회 운 영 규 정	문서번호: 별책-총무-29
	시행일자: 2024.05.07
부 칙	페이지수: 7
	개정번호: 1

부 칙 (2021.12.29.)

1.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4.05.07.)

1. 제5조 위 개정규정은 2024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